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324 |
|----------|-----|

제출연월일 : 2008. 5. 7.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일괄입찰 실시설계 심의는 관계법령에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위원회 기능에서 삭제함(안 제2조).

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도시철도기획단장으로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7. 9. 7. ~ 9. 27.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의 설계 및 건설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도시철도기획단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철도 건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도시철도 또는 철도건설업무와 관련있는 4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3. 도시철도 관련 대학교수 또는 각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자
4. 그 밖에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건설계획과장”을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위원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의 설계 및 건설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국가를당사자로서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에 의한 일괄 입찰의 실시설계 심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p> <p>1. ~ 5. (생략)</p> <p>6. 설계·시공 일괄입찰 실시설계 심의</p> <p>7. (생략)</p> <p>제3조(구성) ① (생략)</p> <p>②위원회 위원장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지하철건설본부 시설부장이 된다.</p> <p>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지하철건설에 관한 전문기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각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자</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의 설계 및 건설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p> <p>1. ~ 5. (현행과 같음) 〈삭제〉</p> <p>7.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도시철도기획단장이 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도시철도 건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대전광역시의회의원</p> <p>2. 도시철도 또는 철도건설업무와 관련 있는 4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p> <p>3. 도시철도 관련 대학교수 또는 각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자</p>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2. 도시철도 및 철도건설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또는 전·현직 공무원</p> <p>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p> <p>제5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②시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10조(간사등) ① (생략)</p> <p>②간사는 건설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안전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p> | <p>4. 그 밖에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제5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 3. (현행과 같음)</p> <p>제10조(간사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 ----- 위원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 -----</p>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 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1.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다만, 기본설계로 대안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공중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입찰안내서에 정하여진 지침에 따라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③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 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 다. 그 밖에 공고로 요구한 사항
2. 실시설계서의 경우
 - 가.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 다.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 라.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와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은 때

2. 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안입찰서·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

第5條 (建設技術審議委員會) ①建設技術의 振興·開發·活用等 建設技術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中央委員會"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軍事施設工事중 軍事機密에 關連된 建設工事に 關한 設計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特別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特別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이 定하는 기준에 따라 建設交通부장관이 환경부장관등 關係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協의하여 定하고, 地方委員會의 構成·機能 及 운영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해당 特別시·광역시·도 及 特別자치도의 條例로 定한다. 但만, 特別委員會를 두는 경우, 該 構成·機能 及 운영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國防部長官이 定한다.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①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

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1의5.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2항 제1호의2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개정 2001.7.30>)

①삭제 <2001.7.30>

②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발주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5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③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3.12>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7.30, 2005.6.30, 2005.12.30, 2006.5.25, 2006.12.2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6.12.29>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10.30]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6조 (설치) ①지하철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획단을 설치한다.

②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획단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에 둔다.

제37조(단장)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획단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하철 건설업무의 기획·조정
2. 지하철건설 기본조사·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3. 지하철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4. 지하철 용역업무에 관한 사항
5. 지하철 건설관련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철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